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<u>환특법</u>”이라 한다.) 위반사실이 없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%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<u>환특법</u>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</p> <p>4. ~ 5. (생략)</p>	<p>② 제1항에도 ----- ----- -----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「수출용 ----- ----- (이하 “<u>관세환급특례법</u>”이라 한다.)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관세환급특례법 ----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 준용 규정 삭제 및 문구 수정</p> <p>○ 법제처 공식 약칭 사용</p> <p>○ 법제처 공식 약칭 사용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2조(수출신고필증의 교부)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<u>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(재정경제부 훈령)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</u>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세관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4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<u>별표 9</u>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22조(수출신고필증의 교부) ① ----- ----- <u>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----- ----- <u>별표 10</u>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「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」 폐지('05.08.18., 기재부) 사항 반영</p> <p>○ [별표8] 신규추가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정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6조(신고사항의 정정)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<u>별표 8</u>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(전자이미지 전송 포함)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<u>별표 10</u>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별표 10</u>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.</p>	<p>제26조(신고사항의 정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9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별표 11</u>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1</u>의 ----- -----.</p>	<p>○ [별표8] 신규추가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정정</p> <p>○ [별표8] 신규추가에 따른 기존 별표 번호 정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③ (생략)</p> <p>제27조(신고의 취하)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<u>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(신청)서</u>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, 증빙서류를 제출(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 다만,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취하신청(승인)서를 접수한 세관장은</u> <u>정당한 이유</u>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신고의 취하) ① ----- ----- - <u>별지 제2호의2서식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<u>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「관세법」 제250조(신고의 취하 및 각하) 제4항 개정('20.12.22.신설)사항 반영을 위한 수출신고취하 승인(신청)서 분리·신설</p> <p>○ 「관세법」 제250조(신고의 취하 및 각하) 제4항 개정('20.12.22.신설)사항 반영</p> <p>※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(제18조, 기 반영 : 10일)</p>